

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 변경 확정 공고

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실시한 「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 변경」 행정예고(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-316, 345호)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 변경을 확정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4일

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



1. 공고 사항: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구위반 적용 변경

2. 공고 내용

가. 대상: 전체 중학군

나. 시행시기: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

현행 학구위반 적용 대상		변경 학구위반 적용 대상
동탄 지역	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자 (통학구역 위반자 및 위장 전입자)	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자 (통학구역 위반자 및 위장 전입자)
동탄 제외 지역	실제 거주지 중학군 내 초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자	

※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으나 재학 중에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, 전학하지 않더라도 학구위반(통학구역 위반) 적용 대상이 아님

※ 학구위반 적용 시 배정 방법: 실제 거주지의 학군 내 각 지망별 중입 배정 규정을 지킨 학생들을 배정한 후, 배치 여력이 가능한 학교에 배정함

※ 단,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(2020학년도 기준 5학년 학생)까지는 현행 배정원칙 적용 (2020학년도 현재 기준 4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적용)

3. 주요 검토 내용: 붙임2. 참조